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사혁신처장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38명)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5 급 ( 행 정 )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17명 지역구분 : 33명 <small>*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small>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전 부처
	행정직 (인사조직)	3명	“	필수(5):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법무행정)	7명	“	필수(4):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재정)	76명	“	필수(4):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국제통상)	11명	“	필수(4):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1):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38명)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행정직 (교육행정)	12명	“	필수(4):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2명	“	필수(4):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보건복지부
	교정직 (교정)	2명	“	필수(4):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법무부
	검찰직 (검찰)	2명	“	필수(4):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검찰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2명	“	필수(4):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중 1과목	법무부
5 급 ( 기 술 )	공업직 (일반기계)	전국 : 10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표준 참조	“	필수(3): 기계공학,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 (전기)	전국 : 4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표준 참조	“	필수(3):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기기 선택(1):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 (화공)	6명	“	필수(3):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농업직 (일반농업)	전국 : 3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표준 참조	“	필수(3):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 (산림자원)	2명	“	필수(3):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산림청
	해양수산직 (일반수산)	2명	“	필수(3):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선택(1):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 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환경직 (일반환경)	전국 : 5명 지역구분 : 1명 *지역별 구분표준 참조	“	필수(3):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부, 그 밖의 수요부처
	기상직 (기상)	2명	“	필수(3):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선택(1): 기상측기 및 관측, 마개항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기상청

구분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38명)	시 험 과 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시설직 (일반토목)	전국 : 12명 지역구분 : 4명 <small>*지역별 구분비율표 참조</small>	“	필수(3):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 (건축)	전국 : 4명 지역구분 : 1명 <small>*지역별 구분비율표 참조</small>	“	필수(3):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4명	“	필수(3):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선택(1):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행정학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 (전산개발)	2명	“	필수(3):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전 부처
	전산직 (정보보호)	3명	“	필수(3): 정보보호관리, 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선택(1): 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보안, 자료구조론	전 부처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3명	“	필수(3):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사회로 선택(1):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구분	선발분야	선발예정 인원 (총 45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필 수	선택 또는 지정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일외 반교	36명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I, 학제통합논술시험 II	
	지역외 외교	중동	2명	“	아랍어 (아랍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없음	학제통합논술시험 I, 학제통합논술시험 II
		아프리카	1명	“	불어(외국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중남미	2명	“	스페인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러시아·CS	1명	“	러시아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아시아	1명	“	중국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구분	선발분야		선발예정 인원 (총 45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필 수	선택 또는 시정 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교 전문	경제· 다자외교	2명	"	없음	없음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 행정직 인사조직 직류의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입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범위에서 출제되며, 도시계획은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됩니다.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 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5급 공채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외교관후보자 중 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인원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후 공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인력은 2019년부터 5등급 외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	8	4	2	3	1	2	1	2	3	1	2	2	3	3	1	1	3
행정직 (일반행정)	33	6	3	1	2	1	2	1	1	2	1	2	2	3	2	1	1	2
공업직 (일반기계)	1	-	-	1	-	-	-	-	-	-	-	-	-	-	-	-	-	-
공업직 (전기)	1	1	-	-	-	-	-	-	-	-	-	-	-	-	-	-	-	-
농업직 (일반농업)	1	-	-	-	-	-	-	-	-	-	-	-	-	-	1	-	-	-
환경직 (일반환경)	1	-	-	-	1	-	-	-	-	-	-	-	-	-	-	-	-	-
시설직 (일반토목)	4	1	1	-	-	-	-	-	1	-	-	-	-	-	-	-	-	1
시설직 (건축)	1	-	-	-	-	-	-	-	-	1	-	-	-	-	-	-	-	-

## 2. 시험 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제4항 및 별표 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등'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

※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분야		관련분야	관련 학위
지역외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	지역, 국제관계, 해당언어·지역관련 학과, 통·번역 등
외교전문	경제·다자외교	<경제외교>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금융, 에너지·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제경영,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다자외교>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책,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는 논문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p><b>&lt;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2018. 9. 1.) 기준으로 판단함</li> <li>·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li> </ul> </li> <li>·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li> </ul> </li> <li>·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8.1.2.)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li> <li>·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 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li> <li>·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li> </ul>
---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다.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8.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3: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행정)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6.23.~6.28.	8.30.
		제3차시험	8.30.	9.18.~9.20.	9.30.
5급(기술)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7.3.~7.7.	8.30.
		제3차시험	8.30.	9.18.~9.20.	9.30.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6.23.~6.28.	8.10.
		제3차시험	8.10.	9.1.	9.14.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3: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차라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학위 등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류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18. 4. 9.(월) ~ 4. 20.(금)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급 공채 (행정·기술)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	243	97	870	800	88(level 2)	800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PBT) 392점, TOEFL(CBT) 162점, FLEX 480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8.3.5.(월)~3.9.(금)]

##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 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8.3.5.(월)~3.9.(금)]

##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독일어능력 시험(Test DAF)	괴테어학검정 시험(Goethe Zertifika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프/달프 (DELFDALF)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토르플 (TORFL)
일반외교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DALF B2	60점	750점	1단계
지역 외교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70점	850점	DALF C1	70점	850점	2단계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	80점	950점	DALF C2	80점	950점	3단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 시(신HSK)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일본어능력 시험(JPT)	일본어능력 시험(JLP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텔레(DELE)	
일반외교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지역 외교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70점	850점	6급 180점	70점	850점	840점	N1 100점	70점	850점	C1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80점	950점	6급 210점	80점	950점	935점	N1 150점	80점	950점	C2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8.3.5.(월)~3.9.(금)]

라. 어학검증시험 시행

- 응시대상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선택 과목을 '아랍어'로 선택한 응시자
- 평가기준 및 기준점수

구분	평가기준	기준점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단, 문장구성능력 60점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단, 문장구성능력 70점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9.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 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기타 유의사항

-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1·2차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제1차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과정 수료자들은 임용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 라.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마.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사유로 인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합니다.

- 바.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사.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아. 2018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시험이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과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되며 시험시간도 120분으로 조정됩니다.
- 자.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 차.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18년 1월 중에 나라일터(<http://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77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 (일반행정)	- 일반 : 159명 - 장애인 : 10명 - 우정사업본부(일반) : 20명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 (인사조직)	4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 (고용노동)	- 일반 : 117명 - 장애인 : 8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고용노동부
행정직 (교육행정)	3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교육부
행정직 (회계)	6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전 부처
행정직 (선거행정)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무직 (세무)	- 일반 : 68명 - 장애인 :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국세청
관세직 (관세)	- 일반 : 17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관세청
통계직 (통계)	- 일반 : 7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감사직 (감사)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감사원
교정직 (교정)	3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법무부
보호직 (보호)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법무부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77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검찰직 (검찰)	1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검찰청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20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법무부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32명 - 장애인: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학, 기계설계, 자동제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 (전기)	- 일반: 31명 - 장애인: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기	
공업직 (화공)	- 일반: 24명 - 장애인: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7명 -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6명 -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산림청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32명 - 장애인: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 (건축)	- 일반: 16명 -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29명 - 장애인: 2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 부처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8명 -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기학, 전사회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일반: 37명 - 장애인: 3명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독일,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외교부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범위에서, 도시계획은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출제 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고용노동 직류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행정직 인사조직 직류의 시험과목인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됩니다.



##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4,953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행정직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일반) : 232명</li> <li>- 전국(장애인) : 16명</li> <li>- 전국(저소득) : 11명</li> <li>- 지역구분(일반) : 119명</li>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li> <li>- 지역구분(장애인) : 9명</li>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li> <li>-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 20명</li> <li>-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680명</li>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li> <li>-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50명</li> <li style="padding-left: 20px;">*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li> <li>- 병무청(일반) : 100명</li> <li>- 병무청(장애인) : 9명</li> <li>- 병무청(저소득) : 3명</li> </ul>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전 부처
행정직 (고용노동)	- 일반: 520명 - 장애인: 40명 - 저소득: 15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고용노동부
행정직 (교육행정)	- 일반: 45명 - 장애인: 4명 - 저소득: 1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부
행정직 (선거행정)	- 일반: 90명 - 장애인: 7명 - 저소득: 3명	필수(4):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선택(1): 행정법총론, 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업상담직 (직업상담)	- 일반: 54명 - 장애인: 4명 - 저소득: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고용노동부
세무직 (세무)	- 일반: 878명 - 장애인: 66명 - 저소득: 25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세청
관세직 (관세)	- 일반: 155명 - 장애인: 12명 - 저소득: 5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청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4,953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교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통계직 (통계)	- 일반: 55명 - 장애인: 4명 - 저소득: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교정직 (교정)	- 남: 507명 - 여: 50명 - 저소득: 15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법무부
보호직 (보호)	- 남: 97명 - 여: 21명 - 저소득: 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법무부
검찰직 (검찰)	- 일반: 287명 - 저소득: 8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청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일반: 24명 - 저소득: 1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청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일반: 197명 - 저소득: 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법무부
철도경찰직 (철도경찰)	- 일반: 50명 - 저소득: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토교통부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35명 - 장애인: 3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 (전기)	- 일반: 23명 - 장애인: 2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 (화공)	- 일반: 18명 - 장애인: 1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63명 - 장애인: 6명 - 저소득: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76명 - 장애인: 7명 - 저소득: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43명 - 장애인: 4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 (건축)	- 일반: 18명 - 장애인: 1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9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 (전산개발)	- 일반: 50명 - 장애인: 4명 - 저소득: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 부처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4,953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교목)	주요근무 예정기관(예시)
전산직 (정보보호)	- 일반: 5명 - 장애인: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전 부처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63명 - 장애인: 5명 - 저소득: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방재안전 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고용노동 직류의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직업상담 직류의 직업상담·심리학개론은 직업상담의 개념·이론·접근방법·기법, 직업상담사의 윤리, 직업발달 이론, 직업심리 검사, 경력개발과 직업전환에서 출제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 소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계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행정직 (일반)	소계	128	35		13	9	15	14	17	4	14	7
	일반	119	32		12	8	14	13	16	4	13	7
	장애인	9	3		1	1	1	1	1	-	1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소계	730	235		72	77	97	31	105	100		13
	일반	680	서울 116	인천·경기 103	67	72	90	29	98	부산·울산 37	경남 56	12
	장애인	50	서울 8	인천·경기 8	5	5	7	2	7	부산·울산 3	경남 4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 3. 시험 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8.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3: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7.14.~7.17. (취소마감일 7.20. 23:00)	필기시험	8.10.	8.18.	9.17.
		면접시험	9.17.	10.19.~10.23.	11.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2.20.~2.23. (취소마감일 2.26. 23:00)	필기시험	3.30.	4.7.	5.7.
		면접시험	5.7.	5.26.~6.1.	6.15.

- 9급 공채 세무직(세무), 교정직(교정) 등의 면접시험은 해당 근무예정기관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주관기관·세부일정·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필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9급 2018.5.8.~5.11., 7급 2018.9.27.~9.28.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 2018.5.9.~5.10.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3: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567	227	86	790	700	77(level 2)	700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7급(외무영사직렬 제외)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7급(외무영사직렬) : TOEIC 395점, TEPS 417점, TOEFL(PBT) 376점, TOEFL(CBT) 151점, FLEX 420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8. 8.13.(월)~8.17.(금)]

## 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ul>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나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8.4.7.~4.9.), 7급(2018.8.18.~8.20.)
  -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사.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 포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 아.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18년 1월 중에 나라일터(<http://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공통(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7급 및 9급 공채시험 : 공개채용1과(044-201-8242~8256)**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 공개채용2과(044-201-8262, 8363~8367)**